

K-Cash 가맹점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K-Cash 회원과 K-Cash 가맹점이 K-Cash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가맹점의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가맹점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Cash'란 회원이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Chip)이 내장된 전자식 카드에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였다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K-Cash 회원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기관으로부터 K-Cash접근매체를 발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3. '가맹점'이란 K-Cash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이 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가입을 승인받은 업소, 시설 등을 말하며, 온라인 가맹점을 포함합니다.
4. '발행기관'이란 K-Cash 회원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K-Cash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란 K-Cash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하며, '지급용단말기'란 K-Cash를 수용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적용된 구매관련 모듈(PSAM, Purchase Secure Application Module)이 설치된 가맹점의 전자적 장치를 말합니다.
6. 'K-Cash거래'란 발행기관이 전자적 장치를 통해 K-Cash 및 이와 관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K-Cash접근매체를 통해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호의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7. 'K-Cash접근매체'란 K-Cash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

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를 말합니다.

8.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9. ‘거래지시’란 회원이 K-Cash 회원약관에 따라 발행기관 및 은행에 K-Cash 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K-Cash거래가 이 약관, K-Cash 회원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가치저장’이란 회원이 K-Cash 판독기 기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K-Cash접근매체에 온라인으로 금전적 가치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계좌신고 의무 등) ① 가맹점은 대금결제 및 은행과의 거래를 위하여 가맹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가맹점 가입신청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지급용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급용단말기의 구입, 설치 및 유지 등의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지급용단말기 설치시 가맹점 가입신청시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점이 해당 지급용단말기로 K-Cash를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은 다른 가맹점 명의로 K-Cash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가맹점은 K-CASH 로고가 표시된 가맹점 표식을 점포 내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4조(지급용단말기의 사용) ① 은행은 가맹점에 K-Cash의 취급방법 및 지급용단말기의 사용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하며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회원이 K-Cash 사용시 그 처리가 항상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지급용단말기 사용방법의 숙지, 유지 및 관리 등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은 지급용단말기를 불법, 부정한 목적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 가맹점은 지급용단말기의 보안장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K-Cash의 처리) ① 회원이 가맹점에서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K-Cash로 지급하거나 K-Cash의 가치저장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원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가치저장 및 환불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K-Cash로 지급한 경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이 지정한 지급용단말기에 도달한 때입니다.

③ 은행은 회원이 제1항에 의하여 가맹점의 지급용단말기를 통하여 가치저장 또는 환불한 경우 가맹점에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K-Cash의 취급금지) 가맹점은 회원이 제시하는 K-Cash 또는 K-Cash 접근매체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K-Cash 또는 K-Cash접근매체를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제7조(반품 등의 경우 대금지급) 은행은 회원이 K-Cash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하자 등으로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거래는 가맹점이 은행에 대금환불을 요청하면 은행은 고객의 계좌로 환불처리하며, 그 밖의 거래는 K-Cash에 의한 대금지급을 정상적인 것으로 처리하며,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8조(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회원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전자적 장치의 조작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구매 이후 해당 지급용단말기에서 다른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K-Cash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K-Cash로 온라인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K-Cash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과의 분쟁) ① K-Cash에 의한 거래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모든 분쟁은 가맹점과 회원이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원과 K-Cash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분쟁으로 발생하는 거래금액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회원과 가맹점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은행은 지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K-Cash 또는 K-Cash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위·변조된 K-Cash 또는 K-Cash접근매체의 부정사용 조사를 위하여 발행기관이 요청한 조사에 가맹점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거래내역 전송의무) 가맹점은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은행 영업일(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전송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송하여야 하며, 동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발생한 은행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수수료) 가맹점은 K-Cash 취급과 관련하여 가맹점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구분에 따라 K-Cash로 결제한 금액에 업종별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업종별 수수료율은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3조(대금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은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금액에 대하여 제11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지급용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전송하여 은행

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가맹점이 청구한 매출대금에서 제1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가맹점이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금액을 청구일의 익영업일까지 지급합니다. 단, 온라인 가맹점에서 발생한 취소거래는 가맹점에서 취소거래를 전송한 날의 익영업일에 가맹점 예금계좌로부터 출금합니다.

④ 은행은 제5조 제3항의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K-Cash 가치저장 및 환불에 따른 수수료를 제2항에 따른 지급액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⑤ 온라인 가맹점은 거래취소에 따라 당일 대금환불 해당액을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4조(이용한도) K-Cash에 가치저장할 수 있는 최대금액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0만원으로 합니다.

제15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은행은 K-Cash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보존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K-Cash거래에 관한 기록
2. K-Cash거래의 종류, 일시, 금액, 거래 상대방 및 예금계좌를 나타내는 정보
3. 은행 등이 거래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4. K-Cash거래의 신청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5. 해당 K-Cash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종류,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K-Cash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

제16조(오류의 정정 등) ① 가맹점은 K-Cash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은 스스로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7조(분실, 도난) 가맹점에 설치된 지급용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의 분실, 도난, 은행의 과실없이 발생한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가맹점의 손실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가맹점의 모집 등) ① 은행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그 거래에 대하여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1. 분실되거나 도난된 K-Cash 또는 K-Cash접근매체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K-Cash 또는 K-Cash접근매체에 의한 거래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

1. 가맹점 수수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책임
3.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은행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한 2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가맹점예의 개별 통보
2.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광고
3. 은행의 본점,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 가맹점은 K-Cash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K-Cash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가맹점은 회원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K-Cash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K-Cash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K-Cash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K-Cash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6. 가맹점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은행의 승낙 없이 양도, 전매 또는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K-Cash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0조(변경사항 신고) ①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시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이 제1항의 신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가맹점이 주소 및 상호변경 등의 신고를 소홀히 하여 은행으로부터의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상호협력) 가맹점과 은행은 전산장애 및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K-Cash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22조(유효기간)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은행이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자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은행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자격정지·상실 또는 해지 통지가 없는 한 다시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제23조(자격정지·상실 및 해지) ① 은행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맹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전자적 장치 등의 부정사용의 경우
2. 지급용단말기의 무단 대여·양도·담보제공 등의 경우
3. 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맹점의 재산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거나 기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는 등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은행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또는 제37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K-Cash 결제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세무관서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③ 은행이 가맹점 자격을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가맹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 발생시 가맹점에 통지하며, 가맹점은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4조(자격정지·상실 및 해지시의 처리) ① 자격정지·상실 및 가맹점 계약 해지까지의 K-Cash 이용대금결제는 제11조 내지 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자격정지·상실 및 가맹점 계약 해지의 경우 가맹점은 가맹점 표식을 철거하여야 하며, 지급용단말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은행은 자격정지·상실 및 가맹점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거래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지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약관변경 승인 등)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K-Cash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맹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은행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 및 은행 영업점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에 통지합니다.

② 은행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K-Cash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및 은행 영업점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③ 가맹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약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K-Cash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가맹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이의제기) ① 가맹점은 K-Cash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가맹점이 쉽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제27조(비밀보장) 은행 및 가맹점은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Cash 취급으로 알게 된 회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K-Cash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회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28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은행과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9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관계 법령, K-Cash회원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은행의 본·지점 소재지 또는 가맹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